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ABB 일반조건 (2020-1 표준)

1. 정의 및 해석

1.1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다.

"ABB 일반구매조건":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ABB의 일반 조건(2020-1 표준);

"계열사": 어느 당사자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어느 당사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어느 당사자와 공동 지배 하에 있는 사업체;

"개별계약":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서면합의

및/또는 발주서(구매자가 개별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기 위해 제출하는 기타 문서(사양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포함) (구매자가 동의하였거나 발주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급자의 사양서를 포함함);

"구매자":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발주하는 당사자;

"구매자정보": 개별계약 준비나 이행 중에 공급자가 취득하는 자료나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의미하며, 구매자, 구매자 계열사, 또는 이들의 고객이나 공급업체와 관련됐는지 여부는 불문함;

"납품": 제5.1조에 따른 공급자의 상품 납품;

"납품 장소": 구매자가 지정한 창고, 공장, 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물리적 운송을 위한 기타 장소로, 구매자 계열사(해당 구매가격과 함께 기재된 장소들을 포함) 또는 제3의 화물 또는 물류업체의 장소도 가능하며, 만일 아무런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자의 사업장;

"내장소프트웨어": 상품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서, 상품의 일부로 내장된 채 납품됨;

"상품":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납품하는 물품 및/또는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어떠한 형식 또는 매체로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 결과물로서의 모든 자료, 문서 또는 기타 인도품으로서 자료, 도표, 도면, 보고서, 사양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지적재산권": (a)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상표권, 상표명, 디자인, 노하우, 발명신고서(등록 여부 불문); (b) 상기 어느 권리에 관한 신청, 재발행, 확인, 갱신, 확장, 분할 또는 지속; (c)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 및 이에 준하는 세계적인 보호방식;

"발주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해 공급자에게 발행되는 구매자의 주문서, 전자적으로 발행한 주문서도 포함함;

"당사자": 구매자 또는 공급자,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인정보": 신원확인이 된 또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자료나 정보;

"서비스":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 구매자(또는 해당 납품장소에 위치한 구매자 계열사)에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변경발주서": 발주서 또는 발주서 일부를 변경, 생략, 추가 또는 달리 변경하는 등의 발주서 수정.

1.2 조항의 언급은 본 ABB 일반구매조건의 조항을 가리킨다.

1.3 제목은 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ABB 일반구매조건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적용

2.1 ABB 일반구매조건은 개별계약에 적용되며 그 기준이 된다.

2.2 공급자의 견적서, 인정서, 승인서, 사양서 또는 유사 문서와 함께 전달되는 또는 이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조건도 개별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이런 조건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르는 권리를 포기한다.

2.3 공급자는, 명시적으로 서면 승인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개별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이행함으로써, 개별계약을 승인한다.

2.4 개별계약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서면 합의를 요한다.

3. 공급자 책임

3.1 공급자는 다음에 따라, 다음에 부합되게, 상품을 납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3.1.1 해당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3.1.2 개별계약(필요한 서류들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 및 구매자의 모든 지시를 준수하여;

3.1.3 하자 없이, 그리고 제3자의 권리 없이;
그리고

3.1.4 개별계약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 부합되게, 혹은 이러한 특정 목적이 개별계약에 부재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일반적 사용 목적에 부합되게.

3.2 공급자는 업계 기준과 적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해당 상품을 보존 및 보호하며, 해당 납품장소에서 하역 및 검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상품이 포장되도록 한다.

3.3 구매자(또는 해당 납품장소에 위치한 구매자 계열사)가 공급자의 품질 관련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는 이를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개별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공급자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해당 품질 문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한 수행 및 구매자에 대한 보고는 해당 품질 문제에 관한 통지 후 10일(역일 기준) 이내에 이루어진다. 구매자는 상기 근본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거나(감사는 구매자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제3자인 전문가 또는 구매자 계열사 직원을 포함함) 공급자가 본 조를 미준수하는 경우에 공급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질 관련 문제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이러한 경우 구매자가 문제를 발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3.3조가 적용된다.

3.4 구매자는 변경발주서를 발행할 수 있고, 공급자는 그 변경발주서를 이행한다. 변경발주서로 인해 서비스 또는 상품 비용이 증감되거나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소요 시간이 증감되는 경우, 구매가격 및/또는 납품일정을 공정하게 서면상으로 조정한다. 본 3.4조에 따른 조정 청구는 공급자가 변경발주서를 수령한 후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주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조정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가 요청하는 변경발주서는 구매자의 서면 확인이 있는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3.5 공급자는 상품의 납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3.6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공급자의 직원, 공급자의 하수급인에게 발생하였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및 상해를 공급자가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책임진다.

3.7 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및/또는 하수급인이 제기하는 청구 및/또는 소송에 대해 단독으로 독점적 책임을 지며, 이 청구 및/또는 소송으로 야기되거나 관련된 청구, 절차, 조치, 벌금, 손실,

비용, 손해배상, 지출과, 공급자, 공급자의 직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 직업규약, 지침, 해당 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기타 요건에 대한 불이행으로 야기되거나 관련된 청구, 절차, 조치, 벌금, 손실, 비용, 손해배상, 지출로부터 구매자(및 해당 구매자 계열사)를 제한 없이 면책한다. 구매자의 요청시,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유일하고 독점적인 고용주임을 인정하기로 약속하며, 법정에서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들)의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 요청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구매자(및/또는 해당 구매자 계열사)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3.8 소송, 유치권, 또는 담보 또는 저당권 설정과 같은 공급자의 채무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자는 개별계약에 따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직원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같은 지급은 공급자의 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상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급자는 이 지급과 관련해 구매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매자와 구매자 계열사들은 면책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지급, 청구

4.1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납품하는 상품 및/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약인으로 하여, 청구서가 구매자가 명시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구매자는 개별계약에 기재된 구매가격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대금지급은 공급자가 등록된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구매가격에는 모든 수수료와 세금(VAT 또는 이와 동일한 것을 제외하고), 상품의 제조, 유통, 보관 및 포장(반송가능한 포장을 반송하는 비용 포함)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4.2 공급자는 관련 법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구매자의 특정 요건을 준수하여, 감사 가능한 양식으로 청구서를 제공하며, 청구서에는 공급자 명칭, 주소, 연락처가 포함된 참조인; 구매자 주소; 수량; 상품 및/또는 서비스 사양; 가격(청구되는 총 금액); 통화; 세금 또는 VAT 액수; 세금 또는 VAT 번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및/또는 인증수출자허가번호((Approved Exporter Authorization number) 및/또는 기타 세관식별번호(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합의된 지급기한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한다. 공급자는 모든 청구서(특히 사업송장, 견적송장 또는 세관송장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발주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4.3 청구서는 개별계약(또는 구매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에 명시되는 청구서 발송 주소(billing address)로 발송되어야 한다.

4.4 구매자는 개별계약에서 합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청구대금을 지급한다.

4.5 구매자는 오직 원가로만, 그리고 서면 합의된 한도에서만, 비용을 변제한다.

4.6 시간 단위로 청구되는 서비스의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의 작업시간기록(time sheet)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확인을 위해,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시한 작업시간기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청구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작업시간기록의 확인은 어떠한 청구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될 수 없다. 구매자는 구매자가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작업시간기록을 근거로 청구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7 구매자는 개별계약에 따라 제공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상계하거나 보류할 권리를 가진다.

4.8 구매자가 수령한 청구서에 따라 지급일까지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구매대금의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구매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구매대금을 다투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일 위와 같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경우, 공급자는 다투이 없는 미지급 구매대금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또는 당사자들 간에 서면으로 별도로 합의한 날짜)로부터 실제 대금이 지급된 날까지, 대한민국 상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공급자는 어떠한 개별계약에 의한 구매대금의 체납과 관련하여서도 본 4.8조에 의하여 충분한 구제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5. 납품, 서비스의 이행

5.1 개별계약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상품은 INCOTERMS 2020 운송인납품조건(FCA)에 따라 납품장소로 납품된다.

5.2 서비스는 납품장소에서 제공된다.

5.3 공급자는 늦어도 개별계약 승인 시에 최소한 '포장용기 및 내용물 수, 위탁국가의 관세번호, 납품될 모든 상품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 대상인 상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미국 수출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미국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또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특혜원산지 증명서, 적합선언서, 위탁국 또는 목적국 표시는 요청이 되지 않아도 제출되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는 요청 시에 제출한다.

5.4 구매자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구매자의 영업시간(또는 납품장소에서 요청하는 시간) 중에 상품이 납품되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5.5 납품 시에, 공급자(또는 공급자가 임명한 수송인)는 납품서(delivery note) 및 제5.3조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로 요구되는 수출입 서류를 구매자(또는,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납품장소에서 지정된 구매자 계열사)에게 제공한다. 구매자가 부분 납품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납품서에 나머지 납품 예정 목록도 기재한다.

5.6 상품의 소유권은 납품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상품에 내장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경우, 내장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으나, 공급자는 구매자와 모든 사용자에게 상품의 구성 요소로서 및/또는 이들에 대한 지원 편의으로써 내장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전세계적인, 취소 불가능한, 영속적인, 이전 가능한,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제3자가 구매자와 모든 사용자에게 상품의 구성 요소로서 및/또는 이들에 대한 지원 편의으로써 내장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상기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만든다. 공급자는 납품된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나 저당권과 같은 제한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다만, 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대금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6. 승인

6.1 상품의 납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구매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구매자(또는 납품장소에서 지정된 구매자 계열사)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검사 또는 시험하고 공급자에게 하자를 보고하기 위해 합당한 시간을 갖는다. 이 같은 검사 중에 합리적으로 식별되기 어려운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하자의 경우, 구매자(또는 납품장소에서 지정된 구매자 계열사)는 그 하자가 명백하게 된 이후 그러한 하자에 관한 통지를 하기 위해 및/또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거부하기 위해 합당한 시간을 갖는다.

6.2 당사자들은 특정 승인절차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승인은 구매자의 서면 승인서(acceptance statement)(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계열사가 발행한 것)를 조건으로 하게 된다.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미리 서면으로 구매자(및 관련된 어느 구매자 계열사)에게 통지한다.

6.3 구매자는 구매자가 거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개별계약에 기재된 구제책을 실행할 수 있다.

7. 지연

공급자는 어떠한 날짜 또는 시간에 따라, 적어도 개별계약에서 명시한 납품기한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상품의 납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합의된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다음을 행할 수 있다.

7.1 개별계약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지;

7.2 상품의 차후 납품 및/또는 서비스의 차후 제공을 거부;

7.3 타 공급자로부터 대체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 구매자(또는 지연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구매자 계열사)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지출을 공급자로부터 회수;

7.4 공급자의 지연으로 인해 구매자(또는 지연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구매자 계열사)에게 발생한 비용, 손실, 지출, 지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그리고

7.5 개별계약에 합의된 지체상금을 청구.

구매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의 배상을 본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하나 이상의 구제책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고, 본 제7조의 다른 조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구매자의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8. 하자보증 및 구제책

8.1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개별계약(제3.1조에 기재된 공급자 책임)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8.2 공급자는 납품일 현재 상품이 새 것이며 사용되지 않았고 하자보증 기간 중에 하자가 없을

것임을 보증한다.

8.3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으로부터 24개월, 또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합의한 기간이다.

8.4 구매자의 통지 후 48시간 내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으로써 공급자가 하자보증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구매자는 구매자의 재량으로, 그리고 공급자의 비용으로, 아래의 구제책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8.4.1 공급자의 개별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작업을 공급자가 수행할 기회를 제공 및/또는 하자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신속한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음;

8.4.2 하자 있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자가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도록 지시;

8.4.3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개별계약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수행(또는 제3자가 수행하도록 지시);

8.4.4 추가적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 수령을 거부;

8.4.5 공급자의 개별계약 위반으로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가 입었을 수 있는 어떠한 손해도 없도록 보증;

8.4.6 개별계약 해지에 대해 ; 이 경우,

8.4.6.1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수령이 거절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대금의 지급을 포함); 그리고

8.4.6.2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구매자로부터 받은 보수를 구매자에게 반환하고 공급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상품을 회수; 그리고

8.4.6.3 구매자는 동등한 대체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다른 공급자로부터 조달(이를 이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

8.5 하자보증에 대한 위반시, 구매자가 만족할만한 시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전체 하자보증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8.6 개별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이용 가능한 권리와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이용 가능한 권리 또는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는다.

9. 지적재산권

9.1 제9.2조에 따라, 공급자는 내장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 취소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재실시 가능한(sub-licensable),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를 구매자와 계열사들에게 이로써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라이선스가 구매자와 계열사들에게 부여되도록 주선할 것을 약정한다.

9.2 공급자는 구매자(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계열사에게)에게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상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한다. 또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시 구매자 비용으로 구매자(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계열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9.3 개별계약 이전에 또는 개별계약 외적으로 공급자가 생성하였거나 라이선스를 가지는 상품의 지적재산권("기존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또는 제3자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기존 지적재산권이 서비스에서 비롯된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서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즉 전 세계적, 취소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재실시 가능한(sub-licensable),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기존 지적재산권을 개선, 개발, 판매, 유통, 2차 라이선스, 또는 달리 이용할 권리 포함)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제3자 보유자가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서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기와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주선할 것을 약정한다.

9.4 내장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납품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알리고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적어도 그와 동일한 품질과 기능을 지니는 소프트웨어로 공급자의 비용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

9.5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가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에 대하여 제기되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나 구매자의 재량으로 (i) 구매자, 구매자 계열사 및 구매자의 고객이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ii)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iii) 위반을 범하지 않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등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교체한다. 아니면, 구매자는 개별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에 따라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계열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0. 규정의 준수, 청렴성

10.1 공급자는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0.2 공급자와 그 하수급인은 ABB 금지제한물질 목록(ABB List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Substances)을 준수하고 상품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 구매자(및/또는 해당 납품장소에서 운영하는 구매자 계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ABB 웹사이트에 기재된 분쟁광물(Conflict Materials) (www.abb.com – Supplying – Material Compliance – ABB Policy and Supplier Requirements 등을 통해 알 수 있음)에 관한 보고 및 기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매자(및 관련된 구매자 계열사)에게 요청 받은 문서, 증서, 진술서를 제공한다. 공급자가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사용된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재료에 관해 구매자에게 한 진술은(직접 또는 간접 진술 여부 불문) 개별계약에 따른 진술로 간주될 것이다.

10.3 공급자는 모든 해당 무역관세법, 규정, 명령, 정책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히 준수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여기에는 모든 필요한 세관통관요건, 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서 및 허가면제의 충족, 해당 정부기관에 대한 적절한 신고, 및/또는 서비스 제공, 상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표나 이전에 대한 공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0.4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포함된 재료, 장비, 구성품, 부품, 기술 또는 서비스가 구매자에게 벌금 또는 기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할 정부기관"에서 유지하는 통상금지령에 기재된 국가나 지역의 원산지의 것이 아님을 보증한다. 어떠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수출제한 대상이거나 대상이 될 경우에도 그 제한에 대한 상세 사항을 구매자(및 어느 관련된 구매자 계열사)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알리는 것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10.5 공급자는 "관할 정부기관"이 경제적 또는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상자 및 미국 특별제재 대상국 및 제재 대상자 리스트 ("the US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and Blocked Person's List")에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 ("제재 대상자")가 아님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제재 대상자란 관할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제재 대상자 명단에 명시적으로 포함 되어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 개 이상의 제재대상자의 지분을 합하여 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또한, 공급자는 제재대상자가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재산권, 재정적인 권한, 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증하며, 공급자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 공급이

제재대상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양도, 지불, 수출 또는 철회하는 행위와 관련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10.6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해당 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미국해외부패방지법, 2010년 영국부패방지법 및 해당될 경우, OECD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회원국 및 조약국에서 제정하는 법률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반하는 방식으로 고객, 정부 공무원, 또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 이사, 직원,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금전, 선물, 기타 약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각 당사자는 다른 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술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을 보장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뇌물수수 및 부패에 관한 모든 해당 법, 규정, 조례, 규칙을 준수한다. 개별계약의 어느 규정도 당사자나 당사자 계열사가 위와 같이 제공된 또는 약속된 대가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을 가지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다.

10.7 공급자는 ABB의 행동규범 및 ABB의 공급자 행동규범 사본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온라인상으로(www.abb.com/Integrity) 이 같은 행동규범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공급자는 행동규범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0.8 ABB는 아래와 같은 신고 채널을 수립하여 공급자 및 공급자 직원이 해당 법, 정책 또는 행동기준에 대한 위반 혐의를 보고할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 포탈: www.abb.com/Integrity - 신고 채널(Reporting Channels) (연락처는 온라인 포탈에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공급자는 어떠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러한 신고 채널이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0.9 제10조에 포함된 의무의 위반은 개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되며, 이러한 위반시 상대방

당사자는 개별계약상 또는 법률상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권리 또는 구제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개별계약을 즉각 해지할 권한을 갖게 된다. 개별계약에 포함된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위와 같은 개별계약의 위반 및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또는 공급자가 은폐한 수출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채무, 손해, 비용, 또는 지출로부터 구매자(및 영향을 받은 구매자 계열사)를 제한 없이 면책한다.

11. 기밀유지, 데이터 보안 및 보호

11.1 공급자는 공급자가 제공하게 될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하는(개별계약 승인 이전 또는 이후 불문함) 일체의 구매자정보와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계열사의 사업, 제품 및/또는 기술에 대한 기타정보를 철저히 기밀로 유지한다.

공급자는 이 같은 기밀정보를 구매자에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이나 기타 3자에게만 공개한다. 공급자는 상기 직원, 대리인, 하수급인, 또는 기타 제3자가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기밀유지 의무와 동일한 의무에 적용을 받고 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공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다.

11.2 공급자는 구매자정보의 무단 접근 또는 공개를 막기 위하여 구매자정보 유형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호기준 또는 공급자가 자신의 기밀적 재산적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방식 중에서 더 높은 기준에 따라 그러한 구매자정보를 보호한다. 공급자는 기밀정보를 정보수령 추가허가자(감사, 법률대리인, 컨설턴트, 고문을 포함하는 공급자의 수권대리인을 의미한다)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단, (i) 엄격하게 그러한 정보는 알 필요가 있는 인에게만 공개하며, (ii) 정보수령 추가허가자는 본 문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담고 있는 기밀유지각서를 공급자와 체결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기밀 보장을 위해 직업행동강령을 준수해야만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가 수시로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보안 절차, 정책 또는 기준—특히, ABB의 공급자 사이버 보안요건(www.abb.com-Supplying-Cybersecurity)을 통해 알 수 있거나 개별계약에 기재됨)—을 준수하며, 정보수령 추가허가자도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11.3 공급자는 (i)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자정보를 이용하거나, (ii) 개별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바를 제외하곤 어느 형식으로 구매자정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iii) 정보수령 추가허가자에게의 공개 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제3자에게 구매자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1.4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위해 적절한 바이러스보호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공급자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업데이트한다.

11.5 공급자는 정보보안 위반 혐의, 또는 구매자정보에 관한 심각한 사고나 부정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구매자(및 영향을 받은 구매자 계열사)에게 통지한다.

11.6 공급자는 구매자(및 영향을 받은 구매자 계열사)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구매자의 계열사들 및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11.7 개인정보 보호

11.7.1.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급자는 관련 정보보호 법규 일체를 준수해야 한다.

11.7.2. 공급자는 각 위험요소에 적절한 개인정보 보안 수준을 보장하고 시스템과 서비스 처리의 기밀성, 청렴성, 가용성 및 회복탄력성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물리적, 기술적 및 조직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11.7.3. 공급자는 구매자나 그 계열사의 합리적인 의견에 의할 때 관련 정보보호 법규 및/또는 관할 감독당국의 지침과 조언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본 제11조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미루지 않기로 동의하고, 그러한 변경은 구매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시행하기로 동의한다.

11.7.4. 공급자는 개별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와의 추가적인 정보처리 또는 정보보호 합의 체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추가 합의가 처음부터 개별계약의 일부로 체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 그 관련 계열사 또는 하수급인은 구매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의무적 법률 또는 관할 정보보호나 기타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그러한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12. 책임 및 배상

12.1 해당되는 의무적 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급자는 공급자의 개별계약 위반으로 구매자 및 이에 영향을 받은 어느 구매자 계열사에게 발생된 모든 채무, 손해, 비용, 손실 또는 지출로부터 구매자(또는 그러한 구매자 계열사)를 제한 없이 면책하고 배상한다.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제3자가 구매자(또는 그러한 구매자 계열사)에게 제기한 청구(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로부터 구매자와 관련된 각 구매자 계열사를 면책하고 배상한다. 구매자의 요청 시에 공급자는 제3자 청구로부터 구매자(또는 관련된 어느 구매자 계열사)를 보호한다.

12.2 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공급자 및/또는 하수급인을 통제 및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공급자의 직원, 공급업체 및/또는 하수급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공급자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 것처럼 책임진다.

12.3 공급자는 명성 있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적절하며 유효한 책임보험 및 법정산재보험에 가입하며, 요청시 그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것이 공급자의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부보된 금액은 책임 제한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

12.4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개별계약에 따른 청구와 상계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해지

13.1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30일(역일 기준) 전에 서면 통지를 보내어 편의상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 경우, 구매자는 납품은 되었지만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에 준하여 공급된 경우)의 가치와 아직 납품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합리적으로 발생된, 증명 가능한 직접비용을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계약에 따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합의된 가격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추가 보상이 공급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13.2 공급자가 개별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8.4조에 따라 구매자는 개별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13.3 (i) 공급자에 대해 가명령이 내려지거나, 자발적 정리절차가 승인되거나, 파산명령 신청이 제기되거나 파산명령이 언도되거나, 혹은 (ii) 법원 또는 채권자가 청산인 또는 관재인을 임명하거나 청산을 신청을 하거나 청산명령 발부 권한을 갖는 상황일 경우, 혹은 (iii) 공급자의 지급불능 사유나 부채로 인해 공급자가(또는 공급자에 대하여) 기타 유사하거나 동급의 조치를 취하는(또는 취해지는) 경우, 혹은 (iv) 공급자에 대한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 구매자는 서면으로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즉각 효력을 발한다.

13.4 개별계약 해지시, 공급자는 당시 공급자의 지배하에 있던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계열사의 모든 재산(구매자정보, 문서, 지적재산권의 이전 등)을 즉시 공급자의 비용으로 구매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반환하고,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문서를 구매자(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계열사)에게 제공한다.

14. 불가항력

14.1 불가항력 사태로 지연이나 불이행이 초래되는 경우, 당사자들(및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납품받은 어떠한 구매자 계열사)은 개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불가항력을 만난 당사자(또는 구매자 계열사)가 개별계약 체결 당시에 예견하지 못했었고, 불가피하며, 해당 당사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단, 해당 당사자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러한 불가항력 사태를 극복할 수 없어야 하고,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 발생 이후 5일(역일 기준) 내에 상대방 당사자(및, 만일 공급자가 영향을 받은 당사자인 경우, 관련된 어느 구매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14.2 30일(역일 기준)을 초과하여 불가항력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양 당사자 가운데 어느 당사자든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어 즉각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15. 양도 및 재위탁

15.1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개별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일부(구매자에 대한 금전채권 포함)를 양도하거나 이전하거나 부담을 지우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15.2 구매자는 구매자의 계열사 또는 해당 계약과

관련있는 구매자 그룹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양수인 또는 지분승계인에게(그러한 양수인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음) 개별계약의 전체 또는 개별계약의 일부를 언제라도, 그리고 한 번 이상으로, 양도하거나, 경개/교체하거나, 이전하거나, 재위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16. 통지

모든 통지는 적법하게 서명을 한 후, 개별계약에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주소 및/또는 해당 당사자가 서면으로 통지하는 주소로(관련된 납품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매자 계열사를 포함), 등기우편, 택배,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한 통지의 경우, 통지 수령 당사자가 발부한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공급자의 개별계약과 관련한 답신, 서신, 정보 또는 문서는 개별계약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17. 포기

개별계약의 어느 조건을 이행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 조건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계약에 포함된 그 조건 또는 다른 조건을 차후에 이행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8.1 개별계약은 구매자가 등록된 국가(및/또는 주, 해당될 경우)의 법(국제사법 및 국제물품판매에 대한 유엔협약은 배제됨)에 따라 규율된다.

18.2 구매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면, 구매자의 등록지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18.3 구매자와 공급자가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동 중재규칙에 의해 임명된

1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그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중재지는 구매자의 등록지가 된다. 중재절차 및 판정 언어는 영어이다.

19. 가분성

개별계약 어느 규정의 무효성 또는 이행불가능성은 개별계약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또는 이행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마치 그 무효하거나 이행불가능한 규정이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다른 규정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개별계약이 효력을 갖게 된다.

20. 존속조항

20.1 해지 이후에도 존속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그 성격이나 맥락상 해지 이후에도 존속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별계약의 조항은 해지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20.2 제8조(하자보증 및 구제책), 제9조(지적재산권), 제11조(기밀유지, 정보 보안 및 보호), 제12조(책임과 배상)은 무기한 존속하며, 어떠한 이유로 인한 개별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존속한다.

21. 완전성

21.1 개별계약(본 ABB GTC를 포함)과 발주서 또는 다른 합의서(첨부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문서들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주제사항과 관련해 당사자 간에 기존에 있었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

21.2 개별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21.2.1 구매자가 작성한 어느 개별계약 (ABB GTC에 대한 수정사항은 개별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을 한도로 함); 다음으로

21.2.2 본 ABB GTC;

그 밖의 다른 문서에 기재되거나 인용하고 있는 어떠한 조항 및 조건도 효력이 없으며, 개별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22. 당사자 관계

22.1 당사자들의 관계는 독립된 당사자의 거래 관계이며 개별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공급자가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라든지 또는 공급자가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계열사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그의 계열사들을 대리하거나 대리해 행위 할 수 없다.

22.2 개별계약은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와 공급자 사이의 관계, 또는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와 개별계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공급자의 직원 사이의 관계가 고용 관계임을 함축하지 않는다. 구매자와 구매자의 계열사들은 공급자 및 개별계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공급자의 직원과 관련하여, 노동, 사회보장제도,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주: ABB GTC/Goods and/or Services (2020-1)과 이를 번역한 본 ABB 일반구매조건(2020-1) 사이에 해석상의 상이한 점이 있다면 국문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